

정 관

2024. 7

차세대 교통인프라
융합산업기술연구조합

Next-genera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Convergence
Industry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Korea (NTICA)

차세대 교통인프라 융합산업기술연구조합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조합은 산업계의 유대강화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종합적 발전을 촉진하며, 미래의 캐시카우사업이나 고위험 기술, 업계의 공동 애로사항에 대해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하여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

본 조합은 '차세대 교통인프라 융합산업기술연구조합'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라 하며, 영문명은 'Next-generation Transport Infrastructure Convergence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 (NTICA)'이라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(경기도)에 두며, 필요에 따라 타지역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 등)

-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조합원 상호간 협력적인 공동사업 추진
 2. ITS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공동개발 및 조정
 3. 기술분과 교류회를 통한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발굴
 4.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 개발 사업 지원 업무(각종 규격, 시방 및 기준제정 업무)
 5.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및 건의 진흥에 관한 사항(기자재 및 특수자재 공동구매)
-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제1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본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.
- ⑤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본 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.

제2장 조 합 원

제5조 (조합원의 자격)

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교통 및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.

제6조 (가입)

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가입코자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제7조 (회비)

- ①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비 및 연회비,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 출연금 및 용자금 수혜업체로부터 일정률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조합원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특별회비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.

제8조(탈퇴)

- ① 조합원이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권리와 의무)

- 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 및 선거권을 갖는다.
-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제명)

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제9조 제2항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3. 제7조에서 정한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4.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1조(조합원 지위의 승계)

- 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,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.

제3장 임 원

제13조 (임원)

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1명
- 2. 이사 10명 이내
- 3. 감사 1명

제13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임원의 선임 등)

-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- ②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정한다.
- ③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 -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-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.
- ⑤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.
- ⑥ 임원이 조합원사에서 퇴직할 경우는 조합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

된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본 조합의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4장 회 의

제16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.

제17조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4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
- 5.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제19조(이사회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0조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-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

할 수 있다.

제2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
2. 상임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22조(의결정족수 등)

- ① 총회, 이사회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(대리인 참석)

총회,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
제24조(의사록 작성)

총회,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회 계

제25조(회계연도)

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6조(회계의 원칙 및 구분)

- ①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.
- ② 본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목적사업회계”라 한다) 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(이하 “수익사업회계”라 한다)로 구분한다.

제27조(재원)

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제7조의 가입비, 연회비,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특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장 사 무 국

제28조(사무국)

-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29조(사무국의 운영)

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30조(해산)

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잔여재산의 처분)

- 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

제32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

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,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
3. 조합원 명부
4. 결산관계 서류
5. 재산목록

제33조(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)

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4조(변경신고)

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조합의 명칭
2. 이사장
3.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부 칙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차세대 교통인프라 융합산업기술연구조합

발기인	김 병 성 (인)
-----	-----------

발기인	한 동 진 (인)
-----	-----------

발기인	유 승 모 (인)
-----	-----------